제298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차(부록)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검토과정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제출일자 : 2023년 1월 27일

○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나. 위탁시설(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개요

○ 소재지 : 중구 국채보상로 655, 화성파크드림시티(5, 6층)

○ 규 모 : 오피스텔 32실(자립생활실 25, 자립체험관 5, 상담실 등 2)

○ 인 력 : 5명(센터장 1, 사례관리사 등 4)

○ 사 업 비 : 314백만원(시 민간위탁금 100%, '23년 기준)

- 인건비 221백만원, 프로그램비 39백만원, 운영비 27백만원, 기타 27백만원

○ 운영현황

구분	기 간		수탁기관
시범사업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공모사업)	'15.4월~'18.3월	3년	한국SOS어린이마을 대구YWCA
민간위탁	'18.4월~'21.3월	3년	대구YWCA
민간위탁 (재계약)	'21.4월~'23.3월	2년	대구YWCA

다. 위탁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 퇴소, 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종합적 지원을 위해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의 운영 필요

라. 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4. 1. ~ 2026. 3. 31.(3년)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위탁범위 :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 주요위탁사무

-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의 발굴 및 조사, 상담
-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의 사례관리 및 자립계획 수립
-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을 위한 주거지원
- 자립체험 및 자립생활 지원 등 그 밖의 자립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

마.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6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위탁사무의 기준 및 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조례 제10조(위탁운영)

3. 검토의견

□ 제안취지

○ 2023년 3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민간위탁 계획 및 위탁운영 실적

○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 퇴소 및 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생활을 원활히 지원하고 자립통합지원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민간수탁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여 3년간('23.4.1.~'26.3.31.) 민간위탁(재위탁)하려는 것임.

○ 위탁운영 실적은 아래 표와 같음.

- 자립생활실 이용현황(2018년~2022년)

(단위: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아동양육시설	9	25	7	25	10	21	12	19	10	15
그룹홈	1	0	1	1	1	2	2	1	2	3
가정위탁	0	0	0	0	1	0	1	1	1	1
소 계	10	25	8	26	12	23	15	21	13	19
연도별 합계	**35**		**34**		**35**		**36**		**32**	

※ 2018~2022 퇴거* 현황(누계) 68명(남 22, 여 46) *입주기간 만료 등

- 자립준비 교육, 자립체험 프로그램 이용현황(2018년~2022년)

구 분	계	자립준비 교육	자립체험관 운영	비 고
이용자 수(명)	580 (남286, 여294)	328 (남159, 여169)	252 (남127, 여125)	

□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의 거점 역할을 하며, 보호종료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 기관인 만큼,

○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에서도 대상 아동의 자립기반 마련, 종사자 역량강화, 체계적인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의 효율성,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 · 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 ·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3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사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한다.
2.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위탁사무의 대상)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환경 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체육·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재위탁, 재계약 및 제17조제5호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영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관리·감독,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4. 자치구별 균형분포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개모집에 지원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을 수행한 경우에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2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자립통합지원”이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체험·주거·생활·교육·취업 및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
5.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6. “주거시설보호아동”이란 성폭력 피해를 입고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공동생활가정이나 자립지원시설 등에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을 말한다.

제9조(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보호아동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자립통합지원센터(이하 "자립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립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의 발굴
2. 자립통합지원을 하고자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상담
3.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교육
4.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의 사례관리 및 자립계획 수립
5.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을 위한 주거지원
6. 자립체험 및 자립생활 지원
7. 그 밖에 자립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호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아동·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립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붙임 2〕 민간위탁 추진계획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

◈ '23. 3. 31字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사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위탁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제9조 및 제10조(위탁운영 등)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위탁사무의 기준, 대상)

2 추진 방침

○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 확보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선정 진행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선정

○ 수탁기관 변경 시 운영관련 자료 등의 인수인계 철저

3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3. 4. 1. ~ 2026. 3. 31.(3년)

※ 위탁기간 만료 시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재계약 기간 : 2026. 4. 1. ~ 2028. 3. 31.)

○ 위탁사무 :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전반

-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 발굴 및 조사, 상담, 교육
- 아동을 위한 주거지원, 사례관리, 자립계획 수립·지원

○ 위탁시설 :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소재지	시설규모	개관일	직원현황
중구 국채보상로 655, 화성파크 드림시티(오피스텔)	오피스텔 32실(연면적 : 941㎡) (자립생활관 25실, 자립체험관 5실, 상담실 등 2실)	2015.11.1.	5명 (센터장 1, 사례관리사 등 4)

※ 위탁운영 현황

- 운영주체 : 사단법인 대구YWCA(이사장 김연희)
- 위탁기간 : 2018. 4. 27. ~ 2023. 3. 31.(재계약 2년 포함)
- 최근 3년간 지원예산 : '21년 296백만원, '22년 314백만원, '23년 314백만원

○ 위탁방법 : 공개모집(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결정)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시의회 동의	▶	수탁자 공개모집	▶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개최	▶	재위탁 계약서 심사	▶	위·수탁 계약체결
방침결정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수탁자 선정		법무담당관실		수탁자↔대구시

4 세부추진계획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내용 : 위탁사무명, 위탁대상사무 등 위탁범위,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법 등

○ 방법 : 시의회 안건 제출 (제298회 임시회)

○ 제출 : 2023년 1월말

수탁자 공개모집

○ 모집공고

-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 기간 : 2023. 2월 ~ 3월(15일간)

※ 응모법인이 없거나 1개 법인 응모 시 재공고(5일 이상)

○ 신청자격

- 보호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 아동·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선정된 기관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중 계속근무 희망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이행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3. 2월 ~ 3월(공고기간 중)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청소년과 * 접수(제출) 후 서류내용 변경 불가

※ 제출서류

① 대구광역시 사무위탁신청서 1부
② 법인·단체 소개서(연혁, 설립목적, 조직, 사업영역, 자산현황 등)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 첨부), 정관, 허가증 사본 각 1부
- (단체) 사업자등록증(최근 1개월이내), 회칙, 단체대표 인감증명서 각 1부

③ 최근년도 법인 결산공고 및 결산서 각 1부
④ 최근3년간 유사분야 사업추진 현황(A4, 10매이내) 1부
⑤ 회계·자체감사 결과, 성과평가 결과 제출(최근 3년내 市 민간위탁을 수행한 경우)
⑥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요약본(a4, 4매이내) 1부
⑦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1부
⑧ 기타 사업계획의 실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 신청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A4책자 10부 및 요약본 10부 제본하여 제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수탁기관 선정

○ 일 시 : 2023. 3월 중

○ 선정방법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위원 9명)의 심사를 통해 선정

※ 자립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제10조 2항에 근거)

○ 심사기준

평가 항목	세 부 기 준	배 점	비 고
	계	100	
1. 수탁기관의 적격성 (30점)	① 법인(단체) 유형 및 설립목적	10	
	② 법인(단체)의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10	
	③ 법인(단체)의 위탁사무 관련 실적	10	
2.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0점)	④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10	
	⑤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10	
	⑥ 시설운영의 활성화 방안	10	
	⑦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10	
	⑧ 법인(단체)의 시설운영지원 방안	10	
3.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성 (20점)	⑨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0	
	⑩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10	

○ 심사방법

-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PT발표 등을 감안 심사표에 의거 채점
  ※ PT발표는 20분 내외, 발표자료(10부, 한글파일)는 발표 전일까지 제출
- 위원회에서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산술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최고 득점기관 선정
- 최고득점이 동점일 경우 ① 수탁기관의 적격성, ② 센터운영 전문성과 책임성, ③ 지역사회 협력관계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법인(단체) 선정
- 재공고 이후 1개 법인(단체) 신청 시 적격여부만 심사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및 세부심사계획 별도 수립

○ 선정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소정 기일 내 협약 체결하며, 불응할 경우 차 순위자와 협약 추진
- 수탁자로 선정된 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가능

5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 승인 : 제298회 임시회(2.7.~2.16.)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2월 ~ 3월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및 수탁기관 심사계획 수립 : 2023. 2월중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2023. 3월중

○ 위·수탁 협약체결 : 2023. 3월중

○ 사무 인수인계 : 2023. 3. 31.까지

○ 위탁사업 개시 : 2023. 4. 1.

※ 업무 추진 일정이 지연될 경우 위탁사업 개시 전까지 사무를 계속하도록 조치